

경부선 (국철1호선 -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2. 9.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30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6일
- 라. 상정일자 : 제17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2년 9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국장 오상균)

가. 제안이유

- 1) 경부선 국철1호선으로 인해 단절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6개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가 공동으로 뜻을 모아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용역수행을 포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승인받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협의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4조)
- 2)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상·하반기 2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9조)
- 3)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과장 및 실무팀장으로 한다.(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중성)

가. 본 규약안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역수행을 포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 규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임.

나. 주요내용을 보면

- 1) 협의회는 6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며 주관은 2년마다 순환제로 함.(안 제4조)
- 2) 회의운영 시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하도록 함.(안 제9조)
- 3) 협의회는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협의함.(안 제10조)
- 4)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 및 실무팀장으로 함.(안제13조)

다. 그동안 경부선 국철1호선으로 인해 영등포구가 양분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철도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가 2012. 5. 3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라. 이번 규약안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공동용역사업의 지자체별 용역비 분담액을 명문화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하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6개 자치단체 간 협약사항을 규약으로 정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 | |
|----------|---------|
| 의안 번호 | 제 152 호 |
|----------|---------|

제출연월일 : 2012.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경부선 국철1호선으로 인해 단절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6개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시, 군포시)가 공동으로 뜻을 모아 경부선철도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용역수행을 포함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승인받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4조)
- 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상·하반기 2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9조)
- 다.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과장 및 실무팀장으로 한다.(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필요없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 반부패영향평가 심사여부 : 해당없음

붙임 :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1부.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안)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및 경기도 안양시·군포시를 지나는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경부선(국철1호선 -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 (구성 및 주관) ① 협의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경기도 안양시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구로구청장·동작구청장·영등포구청장, 경기도 군포시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 주관은 제1항의 순서에 따라 2년마다 순환제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 1인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 과장급으로 한다.

제6조 (회장) 회장은 제4조 제2항의 협의회 주관기관 차례의 단체장이 한다.

제7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운영 등)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관계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개최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회의 운영을 통하여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효율적·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협의안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철도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노량진역에서 당정역까지 경부선 철도구간을 국책사업으로 지하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철도 지하화 건의 관련 필요한 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의회가 철로주변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단절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결)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 과장급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 및 실무팀장으로 한다.

제14조 (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 용역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5조 (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위원들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보칙) 협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